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
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489
----------	------

2020년 6월 19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5월 21일, 황인구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

(2020년 6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황인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」의 제정으로 그 내용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 내용을 통합하여 포함시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의 폐지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폐지조례안은 2020년 5월 21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89호로 발의되어 2020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폐지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」에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조례 제5719호로 제정되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그러나 동 조례의 위원회 구성·운영 및 학교체육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¹⁾」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이는 입법의 통일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의 폐지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 -6995, 2020.5.29.).

1) 의안번호 제1490호(2020.5.21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